

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

김포시 고시 제2017-207호(2017. 11. 2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19-156호(2019. 9. 18.) 및 김포시 고시 제2022-50호(2021. 2. 24.) 및 김포시 고시 제2022-247호(2022. 11. 2.) 및 김포시 고시 제2024-107호(2024. 4. 18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.

2024. 7. 8.

김 포 시 장

1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
 -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
2.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- 김포시 북변동 380-8번지 일원 / 115,021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김만(김포시 북변중로 42 오성빌딩 2층)
4. 정비사업시행기간(변경)
 - 당초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
 - 변경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6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. 11. 29.(변경없음)
6. 의제처리 되는 사항(변경없음)
 - 가.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 - 나.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
 - 다.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
 - 라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(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)
 - 마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
7. 수용(사용)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(변경없음)
8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. 끝.